	보 도 자 료		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력신
국토교통부	배포일시	2018. 11. 16(금) 총 2매(본문 1, 참고 1)	보다나은 정부
담당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부서 도로공사과	담당자	• 과장 백봉기, 주무관 홍성호, 주무관 심상윤 • ☎ (033) 769-5830, 5832, 5852	
보 도 일 시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원주청, 강원권내 국도 및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실태 점검 실시

- 도로변 미관 보존, 도로교통위험방지 등 도로의 기능 향상 도모 -

- □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(청장 주현종)은 오는 11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**강원도관내 일반국도 및 지방도**의 **접도구역**에 대해 불법건축물 등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도로의 기능을 제고하고자 **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**이라고 밝혔다.
 - * (접도구역) 도로구역으로부터 양측 5m(지자체에서 관리)
- □ 주요 점검내용은 **접도구역내 불법건축물 및 공작물 발생** 유·무, **접도구역내 표주관리 상태 및 관리대장** 작성 현황과
- 접도구역 경계표지 및 안내표지의 관리상태와 규격의 적정성 여부, 불법도로점용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여부 등이다.
- □ 금번 점검시 **불법 또는 관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에 즉시 시정**토록 조치하여,
- 접도구역의 합리적인 관리와 장래 도로확장을 위한 공간확보, 구조물 손괴방지, 도로변 미관의 보존 및 도로교통 위험 방지 등 도로의 기능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심상윤 주무관(☎ 033-769-585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 고

접도구역 지정 기준

가. 지정대상도로 및 지정권자

○ 고속국도 : 국토교통부장관(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대행) ○ 일반국도 : 국토교통부장관(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)

O 지 방 도 : 도지사

※ 시도·군도·구도의 경우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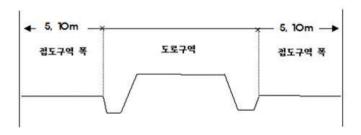
※ 도시지역은 접도구역 지정 제외

나. 지정기준

O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각각 아래표의 구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

도로의 종류	지정폭(양측 각각)	비고
고속국도	10m	
일반국도	5m	
지방도	5m	

※ 접도구역 지정 보기



다. 관리책임자

O 고속국도: 한국도로공사사장(지역본부장)

O 일반국도・지방도 : 도지사(시장・군수)